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388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중구 지방공무원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신설(안 제36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 신설로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자치법규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실적가점 부여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 신 설 〉</p>	<p><u>제36조(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직 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 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 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 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u></p> <p><u>② 실적가점 부여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 도로 정한다.</u></p>